

기자회견 자료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3. 난민재신청자 등 처우 현황 실태, 문제상황 _ 김영아 대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4.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 국제규범 위반 _ 김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5. 난민재신청자 등 체류자격연장거부/출국명령 관행의 위법함 _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6. 기자회견문 낭독 _ 이현주, 최영란 활동가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취재요청서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소송 기자회견

발신일 : 2022년 7월 6일

문의 :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010-8706-3382)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22년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난민재신청자에 대해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난민재신청자는 난민법상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허가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아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지침에 의하여 난민신청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지난 2021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1월 헌법재판소에 취업허가에 관한 난민법 제40조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2022년 7월 8일 2시 3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거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061)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에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대구고등법원 앞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단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또는 유학생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사례군에 대해 체류연장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명령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시키는 체류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민재신청을 억제하고, 난민재신청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연장 목적의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난민 체류지침에 따르면 여전히 난민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32명이며, 2021년 난민인정률은 1%에 불과했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하지 못한 난민심사 역량, 절차보장의 미흡, 조직적인 부실심사의 지시 사건 등으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신청자가 짊어지고 있다. 체류연장을 거부하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체류지침의 운영으로 인해 난민재신청자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박탈된 상태로,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 언제든 출국을 유예하는 것을 멈추고 출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주어진 기한을 경과하면 구금될 수 있다. 미등록(not registered) 체류이지만, 소위 ‘불법(illegal) 체류’는 아닌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불안한 지위로 출국기한을 2-3달 마다 연장해가면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2-3년의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형태로 주어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난민법 제44조에서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난민재신청자는 체류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취업허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취업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위법하게 차단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은행 업무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음에도 신분증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해진다. 항상 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며, 현재 어떠한 체류상태에 있는지 설명해야 하고, 사실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법무부의 체류제한 정책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난민신청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기본적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

법원도 개별 사건들에서 아무런 체류자격도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난민재신청자 등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체류자격연장을 거부하는 출입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2021년 12월 지연 또는 지체된 난민신청이 그 자체로 남용적 또는 거짓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호신청인은 재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증명서류가 발급되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총실효하지 못한 심사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법무부가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난민재신청자에게 제도를 남용하는 자의 프레임을 씌워 지침으로 체류를 제한하고, 출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하다.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제한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해 낙인 찍기를 중단하고, 난민심사제도부터 제대로 갖춰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

2022년 7월 8일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예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대구] 발언1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 뜻)

지난 1심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뵈었던 법무법인 맑은뜻의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에 와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난민 인정신청 혹은 재신청 심사 중인 바 하디아톨라이 씨 외 5명은, 심사 절차가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출국유예 통지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부터 취업허가를 거절당하여, 장기간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국내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난민법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난민인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이 남용되는 폐해를 막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무부 지침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결국 원고들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현실적 문제로 원고 중 아미 씨, 사랑 씨 두 분만이 항소를 하게 되어, 이 두 분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아미 씨는 말리 국적, 사랑 씨는 기니 국적의 여성이시고, 모두 국내에서 자녀를 낳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사랑 씨는 G-1 비자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취업허가가 가능한 분이나, 취업할 곳의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허가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씨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전 제출해야만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무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원고와 쟁점이 다소 다릅니다.

이번 항소심 소송대리는 기존 1심의 법무법인 참길의 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의 저, 김무락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송윤정 변호사님, 이환희 변호사님, 김연주 변호사님,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명, 옥경훈, 이문원, 정다주, 홍석표 변호사님, 법무법인 원의 정상혁, 김병주 변호사님 등 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님들이 말아 연대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소송과 더불어, 취업허가에 관한 난민법 제40조가 난민신청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도 위 변호사님들의 연대로 진행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대구] 발언 2 당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 온지 6년 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기니는 16살이면 결혼하라고 해요. 나는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친척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해서 친구 아빠 도움으로 한국에 유학생 비자로 공부하러 왔어요. 강제결혼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신청했어요. 나는 기니 돌아가서 또 결혼 안하면 친척 남자들이 죽일 수 있고 그건 법에 안걸려요. 나는 무서워서 기니 못돌아가고 난민 신청 했었어요. 한국에서 라이베리아 사람 만나서 살고 있지만 기니에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기 3명있어요. 여자 6살 1명, 남자 4살, 8개월 있습니다.

나는 화원에서 살고 있고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비자 때문에 일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 3명이랑 난민이의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3명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난민으로 인정안되어서 나처럼 난민이의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 3명 모두 의료보험 안되고 나도 의료보험 안되요. 그래서 우리 아프면 대구의료원 밖에 못가요. 집근처에 있는 병원은 비싸서 못가요. 올해 설날에 셋째가 갑자기 아파서 집근처 병원갔어요. 대구의료원은 빨간날이어서 문 안열었어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3일 정도 입원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200만원 든다고 했어요. 그런 돈 없어서 아이를 그냥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날 엄청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한국에서 있는 동안은 의료보험이 되어서 돈걱정 안하고 병원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G-1 비자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사장님들은 이 비자 좋은 비자 아니라고 일 안시켜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 일주일 2번이나 3번정도 일 있으면 오라고 해요. 모텔에서도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일은 많이는 없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좋은 비자 받아서 일 많이 하고 돈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게 아니고 아이 키우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게 하는 거예요.

[대구] 발언3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난민재신청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취업제한 조치는 위법합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난민재신청자들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불허결정을 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체류방편목적의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난민법에도 어긋하는 것입니다.

난민법상 규정을 보면 난민재신청자에 해당하는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이나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의 의도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난민심사 기간 동안 스스로 노력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취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심 법원은 난민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체류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난민재신청자라고 해서 취업허가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에서 발간한 난민법 해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아무런 생계지원도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현실적으로 실제 난민이 아님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보려는 의도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행정지체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지체는 선량한 난민이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대기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문제는 난민심사관을 늘려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그 밖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남용의 실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제하여야 할 것이지, 난민신청자 전부를 난민인정시까지 난민이 아닌 것을 추정하여 생계지원도 없이 취업활동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선량한 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엄격한 심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 대비 약 5%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2021년 기준 난민신청자 중 생계비를 지원받은 인원이 43명에 불과하고 지급된 기간도 평균 3.7개월에 그쳐 생계비 지원 제도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 신청에 대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현재의 제도는 난민신청자의 취업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송은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벌이고 있는 난민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난민법 해석에 어긋나는 실무가 고쳐질 수 있도록 법원은 난민법 규정 대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발언1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 소식까지 있음에도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2년 7월 8일 잠시 후 2시 35분에 대구고등법원에서는 난민신청자 또는 재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 시간 대구에서도 이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단, 활동가님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6일 난민 인정신청 혹은 재신청 심사 중인 하디아톨라이 님 외 5명이 장기간 지체되는 난민 인정 심사 과정 상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취업허가를 거절당하고, 아무런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난민법 제40조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 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장기화되는 난민 심사 절차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 신청이 남용되는 폐해를 막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자가 체류 자격이 있어야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지침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법무부 지침은 난민재신청자에 대해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하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하도록 하여,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원고 중 아미 님, 사랑 님 두 분 만 항소를 하게 되었고, 두 분은 모두 국내에서 자녀를 낳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사랑 님은 G-1 비자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 취업허가가 가능하나, 취업할 곳의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사랑 님은 위 서류들을 사전

제출해야만 취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무부 지침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두 원고가 다투는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이번 항소심 소송대리는 기존 1심의 법무법인 참길의 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의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송윤정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명, 옥경훈, 이문원, 정다주,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정상혁, 김병주 변호사 및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더불어 취업허가에 관한 난민법 제40조가 난민신청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하여, 위 변호사님들의 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발언 2 김민혁

저는 2018년 난민 신청 단계 마지막인 행정소송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마무리로 난민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나이는 16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의무교육 과정 중에 있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저에게 2주 내로 본국에 돌아가라며 출국명령 서를 내밀었고, 저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와중 난민을 재신청하게 되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등록증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출국 기간을 유예(연장) 시키며 난민심사과정을 지속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이 13살에 난민 신청을 처음 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접 단계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은 1~14시간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3시간가량 진행했고 미성년자인 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며 진행해야 했기에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에 있어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역시 꿈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불일이 있어도 신분증이 없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중학교 때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니깐요...

다음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압수시키거나, 여권에 취업 불가라는 도장을 찍고 법무부 장관 허락 아래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장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선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보증인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사장님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하여서 사장님이 여러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하고 복잡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쓰고 말지 어떤 사장님이 동행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족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호자가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자녀나 부인을 난민으로 보게 되는데 자녀가 인정받았을 땐 보호자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게 과연 가족 결합일까요?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난민과의 숙제입니다.

[서울] 발언3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정변경이 없는 재신청자에게는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난민인정심사, 처우, 체류 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3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률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난민 (재)신청자들의 체류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현 정책은 난민협약을 포함,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반한다. 난민신청자가 취업도 할 수 없고,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난민신청자 본인이 출국이라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난민협약 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출국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출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자발적 송환에 관한 편람(Handbook on Voluntary Repatriation)을 통해 “난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귀환이라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난민 재신청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는 정책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제6조)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7조)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또한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가 내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신청자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더욱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난민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 여성의 난민신청과 관련한 차별금지 및 난민지위 관련 협약의 의무 이행 대한 일반권고 제32호를 발표하여 여성 난민신청자에게 “안전한 숙박시설, 위생 및 건강 시설, 식량, 의류 및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롯하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생계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한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 난민 재신청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UNCTAD가 공식 인정한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늘 강조하듯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시행국가”로서,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발언5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재신청자 등 체류자격연장거부/출국명령 관행의 위법함

- 고장난 체온계인 난민심사제도, 학교를 찾은 학생에게 수업을 할 생각이 없고 학생증 뺏고 청강만 하면 된다고 하고, 심지어 청강하러 오는 것도 보기 싫다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나쁜 교사인 난민심사당국

1. 고장난 체온계와 한국의 난민심사의 불이익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체온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들어갈때 서있는 체온계가 체온을 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40도의 고열인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도 정상체온이라고 표시한다면? 체온계를 바꿔야 합니다. 체온계는 건강을 위한 것인데, 체온을 재지 못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난민심사제도는 고장난 체온계입니다. 당국의 왜곡된 시각과 가치관, 심사관들의 협약의 몰이해, 국가정황정보 시스템의 부재, 위원회의 독립성 부재와 기울어진 사법시스템은 고장난 제도의 망가진 부품들입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와도, 정치적 시위 속 위협한 판결을 받아도, 가족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도, 가족이 명예를 해쳤다고 살해한다고 칼을 들어도, 수십년 가정폭력을 당해서 경찰에 찾아가도 아버지에게 돌려내진 난민들이 한국정부에 찾아와도, 고장난 제도는 언제나 다 난민이 아니라고 하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하고, 심지어 가짜라고 합니다. 난민제도라는 고장난 컨베이어벨트에 올라탄1000명중 996명은 심사와 위원회 법원을 지나3년 후 어느새 그렇게, 불립니다. 그들이 재신청자입니다. 유학을 왔다가, 한국에 일을 찾아왔다가 고국에 전쟁이 나도, 한국에서 눈이 열려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난민신청을 그제서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남용적 신청자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체온계가 고장나서 생긴 것이지, 체온이 이상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운하게 제도가 고장난 한국으로 피난해서 한국정부를 믿고 컨베이어에 올라탄 죄밖에 없습니다.

- #### 2. 학교를 찾은 모든 학생을 수포자라 단정하고, 어차피 대학 못갈테니 학교 오지 말라고 자꾸만 체벌을 가하는 교사와 체류자격연장거부와 출국명령

고장난 체온계를 믿고 한국에 몸을 맡긴 난민들에게는 난민지위를 부당하게 얻지 못하는 것에 더해, 심사기간동안 “난민으로 보호할 생각 없는데 억지로 심사는 해야하니, 알아서 나가”라며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위법합니다.

첫째, 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의무의 위반입니다. 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소에 가서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나가라고 하거나, 체류자격변경을 거부하고 출국기간만 유예해주는게 그러한 법적 사기극입니다. 난민심사를 구하는 난민들의 핵심적인 법적 권리는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를 정확히 어기고 있습니다. 뭐라하냐면 “난민심사는 해줄게” “근데 너 나가”라고 합니다. 보호소에 가워서 나가게 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서 사실상 손발을 묶어서 괴롭게 해서 나가게 합니다. ‘불량한 교사가’ ‘너 대학 갈 생각 없지? 요즘 공부할 생각있는 학생이 어딴어. 학교는 와도 돼. 그런데 나는 너 가르칠 생각 없어. 그러니까 학교오지 말든 맘대로해’ 라며, ‘당신은 난민 아닌게 분명해. 요즘 한국에 난민이 어딴어 다 돈벌러 온거지’라는 선입견으로 ‘난민심사는 해줄게, 근데 나는 받아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가는게 편할걸’. 외국인등록증 없이 한국에 살면 괴로울거야 그러니까 어서 나가’.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는 난민들은 자신들을 한없이 하대하고 손발을 묶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 컨베이어 벨트에 또다시 몸을 맡깁니다.

둘째, 난민법 제5조 제6항의 위반입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는 체류자격을 주든지 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제5조 제6항은 별 의미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체류자격을 주든지 말되지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동어반복이라면 왜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위 규정의 의는 강제송환금지의무의 수범자인 출입국 당국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심사기간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해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무의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난민심사를 해야할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부여해야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동일합니다. ‘하기 싫은 숙제’인 난민심사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교사가 만들어낸 잘못된 핑계입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학생이 대학도 못갈 것 같은데, 수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왜 힘들게 가르쳐? 수업도 하기 싫다 맘대로해’. 그렇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심사당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난민심사를 하는 동안 체류관리를 체류자격 부여가 아닌 출국기한의 유예로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3조의 위반입니다.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권리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외국인의 체류를 체류자격 부여와 기간의 관리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책무가 당국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엄격한 책무에 예외적으로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출국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출국유예 사유는 “출국을 해야할 사람”에게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객관적 출국 불가능’이 생겼을 때 ‘30일도 안되는 단기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출국 불가능’이거나 ‘장기간’이 될 경우는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합니다. 이 경우도 원칙 30일, 예외적으로 더 길게 할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항공편이 없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난민신청을 통해 심사책무’가 당국에 부여된 경우 ‘출국을 명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법하지만, 그 경우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난민심사기간은 소송시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도 걸립니다. 게다가 이는 ‘객관적’ 출국불가능 사유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외국인의 권리를 위해서 뿐 아니라, ‘관리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이라도 체류자격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도 안되는 예외적인 기간동안 잠시 출국기한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예외적 재량이 당국에게 부여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3년 4년 동안 난민들에게 불안정한 지위라는 고문을 가하는 것은 탈법입니다. ‘난민인정안해줄거야. 그냥 나가면 안되겠니?’라고 하는거에 더해 ‘나는 사실 너를 관리하고 심지어 수업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라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을 가르칠 의지가 없는 게으른 교사’에 더하여 ‘나 너 가르칠 생각없다는데 왜 자꾸 학교에 나와? 너 학생증 반납해, 일단 학교는 와도 뭐라고는 안할테니, 정식학생이 아니어도 청강생으로 들어’라며 자격을 빼앗는 나쁜 교사입니다. 심지어 청강하러 온 학생에게, 매를 휘둘러 오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장난 체온계인 난민제도는, 모든 학생을 수포자라고 단정하는 잘못된 선입견과 학생을 가르칠 의사가 없는 게으른 교사나 다름없는 심사당국의 태도, 한국을 택하여 피난할 수 밖에 없었던 불운한 난민들에게 청강생이 주제에 왜 나오냐며 아무때나 체벌을 하는 나쁜 교사와 같이 등장하는 당국의 태도 앞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조아리며, 어디론가 떠날길을 찾아야 하는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온 학생에게 죄가 없듯이,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교사에게 죄없는 난민들이 매를 맞아야 합니까.